

「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사업장 주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할인기준을 통일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방지하며, 공연 부속설비 사용료의 변경된 사항의 반영으로 강동문화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사업장 위치(안 제3조)
 - (현행) 인동가산로 392 → (개정) 인동가산로 392(구평동)
- 단체관람료 할인 인원기준(안 제12조제7항)
 - (현행) 30명 → (개정) 20명
- 문화재단 이관 가능성으로 운영에 관한 문구 변경(안 제20조)
 - (현행) 복지회관 교육과정 운영 → (개정) 복지회관 운영
- 회관 사용료 중 부속설비의 변경사항 및 구성 등 정비(안 별표1)
- 이용료 감면 요율 수정(안 별표2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 및 제156조
-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강동문화복지회관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할인기준을 통일하고 공연 부속설비 사용료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통일성 있는 행정을 위한 조례 재정비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, 사용료의 변경사항 및 구성 등 정비와 이용료 감면 요율 수정 등 일부 개정 부분이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